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수행생활*

차효록(효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상담학과 교수

The practice life of sexual minorities in the Vinaya Piṭaka

Cha, Hyorok(Ven. Hyor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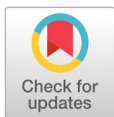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sukwonji@naver.com

Abstract

In South Korean society, sexual minorities live under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them, and being ostracized, they are not protected by institution. The majority of people in South Korea have idea that the sexual minorities deserve respect and equal treatment, yet Discrimination Act has not been legislated. Buddhist sexual minorities have wanted Buddhism community in S.Korea to conduct a study on sexual minorities in Buddhism scriptures, hoping that the research presents merciful logic about sexual minorities, as opposed to Christian community's violent way of approach. This research, trying to shed light on practice of sexual minorities, categorizes and presents the case of sexual minorities from Vinaya Pitaka, which is the world's first fully-restor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Jaeseong Jeon. In Vinaya Pitaka, there are cases of male homosexuality, female homosexuality, bisexuality, male Pantaka, female Pantaka, masculine female, intersexual, Gender transformation. This represents Buddha embraced all of monks and nuns without discriminating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sexuality, sexual characteristics, place of origin, social status, disability, job, color of skin and etc. Among Pantakas, there is one who practiced enough to become a teacher. Back then, it showed that people revealed their sexual identities for themselves. This represents relative difference to present day where sexual minorities would(or could) not able to come out of closet. In terms of human right, present day seems to have been regressing than the era of Buddha, making discrimination and hatred towards sexual minorities. This research provides information in order to prompt understating of sexual minorities so that it helps to correct the bias among our society towards sexual minorities.

Key words : Pali Vinaya Pitaka (Vinaya Pali canon), Sexual minority, Pandaka, LGBT, Gender



OPEN ACCESS

KJRE. 2021 February, 65(1): 61-80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10004>

Received: January 3, 2021

Revised: February 10, 2021

Accepted: February 25, 2021

Copyright: © 2021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220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머리말

오늘날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공공기관, 학교, 상업시설 등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차별받고 있다.¹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우려하여 스스로 정체체성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벽속에 갇힌 존재’로 불릴 정도이다.²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편견과 혐오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고용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던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제정이 무산되었고, 이후 정부와 정당의 법안 발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을 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82.0%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88.5%)가 동의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⁴ 이렇듯 국민들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식도 성숙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의 논의를 살펴보면, 허남결은 불교 역사에서 동성애를 대하는 방식은 ‘중립적(neutral)’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재로서는 불교와 동성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부른 결론 도출은 삼가야 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카베존(Cabezón)은 불교가 동성애에 대해 ‘양가적’(ambivalent)이며, ‘대체적으로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⁶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성소수자에 대한 종단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교계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성소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았다.⁷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불자]의 태도가 다양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불교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지각하는가 하면, 이웃 종교와 달리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며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였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경전을 연구해 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기독교의 폭력적인 방식과는 다른 자비스러운 불교 논리를 내놓기를 고대했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길 희망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포용해주길 기대하였다.

본 연구자는 붓다 당시 출가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을 담고 있는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찾아 분류하고자 한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율장만큼 상세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붓다의 인식과 태도 및 그들의 수행생활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가자들의 생활은 수행과 삶을 따로 떼어 구분 짓지 못할 만큼 밀착되어있는 까닭에, 삶 자체가 수행⁸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팔리어 율장에 성소수자 사례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출가하여 수행생활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승려 교육에서 율장은 우선순위도 의무 교육도 아니다. 구족계를 받은 후에 원하는 승려가 학습하기 때문에, 붓다 당시 성소수자들의 출가수행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한역 율장은 ‘성소수자’와 같은 현대 일상어로 번역되지 않다 보니,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최근 한역된 팔리어 율장을 통해 붓다 당시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빠알리율장』은 테라바다의 율장이지만 오늘날까지 성립된 모든 부파의 율장 가운데 가장 원형적이고도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다.⁹

이 연구의 목적은 붓다 당시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재성이 세계 최초로 완전 복원하여 번역 출간한 『마하박가』, 『쥘라박가』,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차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성소수자들도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불성(佛性)적] 존재라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개선되는 데 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II. 『마하박가』, 『쥘라박가』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빠알리율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부터 차례로 『쑤타비방가(Suttavibhaṅga: 경분별(經分別))』[『빅쿠비방가』+『빅쿠니비방가』]와 『칸다까』[『마하박가』+『쥘라박가』] 그리고 『빠리바라』의 세 부분으로 편집되었다. 그러나 내용적 성립순서로 본다면, 『마하박가』, 『쥘라박가』, 『빅쿠비방가』, 『빅쿠니비방가』, 『빠리바라』라고 보아야 한다. 『빠리바라』는 『칸다까』와 『쑤타비방가』에서 설명한 사항을 분류하고 요약 정리한 보유편이다.¹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용적으로 먼저 성립된 『마하박가』, 『쥘라박가』, 『빅쿠비방가』, 『빅쿠니비방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붓다는 계율을 정할 때 미리 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재정하더라도, 이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면 없애거나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1. 『마하박가』

『마하박가』(Mahāvagga: 대품(大品))는 율장에 속하긴 하지만 오히려 경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율장과 경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마하박가』와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을 합하면, 붓다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원형적인 생애와 가르침이 복원된다. 『마하박가』는 구족계¹¹와 포살(布薩)¹²과 안거(安居)¹³와 자자(自恣)¹⁴ 그리고 주요한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의약의 조달, 의복의 제조, 그리고 승단회의와 승단분열에 관련된 제규 등 붓다의 깨달음과 승단의 성립, 승단의 제도와 규정, 승단의 중요한 행사 등을 다루고 있다.¹⁵ 이 연구에서는 『마하박가』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성소수자 사례를 살펴보겠다.

1) 남자 동성애(게이(Gay))와 양성애(Bisexual)

『마하박가』에 처음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자 동성애(게이(Gay))와 양성애(Bisexual) 사례이다. 석가족 출신의 장로 우빠난다에게 두 명의 사미¹⁶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동성애를 행하였다.

한때 존자 싸끼야의 아들 우빠난다에게 칸따까(Kantaka 칸다까라고도 함)와 마하까라는 두 사미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동성애를 행했다. 수행승[이하 비구]들이¹⁷ 험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비구들] “어찌 사미들이 이러한 비행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비구들이여, 한 비구가 두 사미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 거느린다면, 악작죄가 된다.”¹⁸

당시 장로 우빠난다에게 내려진 죄목은 악작죄(惡作罪)인데, 이는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되었다.¹⁹ 스승이 제자들의 동성애를 미리 알았는지 또는 허용했는지에 대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미들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보이지 않고, 승가에서 퇴출당하지도 않는다. 이 때 제정되는 ‘한 비구가 두 사미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는 계율은 이후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는 사미를 훈계하며 가르쳐서 섬기도록 노력하는 한, 혼자서 두 사미를 거느리는 것이 허용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²⁰

사미 칸다까가 멸빈(滅擯 nāsana: 승단에서 추방)²¹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마하박가』의 제1장 「크나큰 다발」과, 『빅쿠비방가』 제5장 「속죄죄법」에서 나타난다. 『마하박가』에 의하면, 칸다까는 비구니(bhikkhuni)²² 칸따까(Kantakā)를 능욕하는 일이 벌어졌고 비구들은 그를 비난하며 이 일을 붓다에게 알린다. 이때 붓다는 열 가지²³ 사유를 갖춘 사미는 멸빈시키는 것을 허용한다.²⁴

『빅쿠비방가』에서 칸다까는 붓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악견이 생긴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는 즐거움이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위험은 더욱 많다.’고 설한 붓다의 가르침을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며 성교를 범하였다. 그것에 대해 여러 비구들이 바로 잡아주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는 악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붓다는 크게 꾸짖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승가는 사미 칸다까를 멸빈시켜야 한다. … 오늘 이후 세존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야단치며, 승가는 사미 칸다까를 멸빈시킨다.²⁵ 사미 칸다까는 사미와도 비구니와도 음행한 것으로 보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양성애자(Bisexual)라고 할 수 있다.²⁶

2) 뽀다까(paṇḍaka 판다카)

두 번째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뽀다까(pandaka 판다카)이다. 뽀다까는 어원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알이 없는 사람’ 즉, 고환이 없는 자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붓다고사(Buddhaghosa)는 뽀다까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뽀어내는 뽀다까’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자인 동성애자, 둘째는 ‘시샘하는 뽀다까’로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며 질투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자인 관음증환자, 셋째는 ‘야기되는 뽀다까’로 어떤 특수한 수단으로 야기되어 자신의 정액을 분출시키는 자인 자위행위자, 넷째는 ‘보름간의 뽀다까’로 과거의 업력으로 음력 한달 가운데 절반인 이주간만 뽀다까가 되는 자, 다섯째는 ‘남성이 아닌 뽀다까’로 임신 순간부터 남성성이 결여된 자를 뜻한다.²⁷ 붓다고사는 뽀다까가 동성애자나 변태성욕자나 성기능장애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하고 단정적인 어휘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특정 기간에만 성적행동이 달라진다는 묘사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성별을 신체적인 성별[지정된 성별/태어나진 성별]로 정체화하지 않고, 다른 성별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은 “퀘스처너리(Questionary)”²⁸ 혹은 “젠더퀴어(Genderqueer)”²⁹ 혹은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³⁰ 혹은 “투 스피릿(two spirit)”³¹라 한다.

율장엔 뽀다까에 대한 양면적이고 차별적인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들은 ①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되고, 아직 받지 않았다면 주어도 안되며, 이미 받았다면 멸빈되어야 한다.³² 왜냐하면 동성애나 유사성행위로 교단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② 어떤 뽀다까는 친교사[upajjhāya, 은사, 화상, 계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교사는 가정교사나 후견인과 같은 스승으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줄 수 있는 법랍 10년 이상의 스승으로 제자를 둘 자격이 있는 스승을 말한다.³³ 한때 비구들이 뽀다까를 스승으로 삼은 자들에게 구족계를 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뽀다까를 친교사로 삼은 자들에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주면, 악작죄가 된다고 붓다는 말한다.³⁴ 여기에서 은사 뽀다까에 대한 처벌은 보이지 않고, 비구들이 구족계를 주면 악작죄가 되기 때문에 참회해야 했다.

포살을 행하기 위해 ③ 승가에 청정권리³⁵를 위임할 때, 뽀다까라고 자인한다면, 타인에게 청정권리를 위임해야 하고,³⁶ 만약 청정권리를 전하는 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뽀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청정권리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되며,³⁷ 만약에, 참모임[승가(僧伽), saṅgha]에 도착한 뒤에 그가 뽀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청정권리는 전해진 것이 된다.³⁸ ④ 만약에 청정동의[병 때문에 갈마(羯磨)³⁹에 결석한 비구가 자기의 ‘동의의지’를 위임하는 것]를 위임받았는데 불구하고 뽀다까라고 자인한다면, 타인에게 청정동의를 위임해야 하고,⁴⁰ 만약에 청정동의를 전하는 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뽀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청정동의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되며,⁴¹ 만약에 청정동의를 전하는 자가 청정동의를 위임받고 참모임에 도착한 뒤에 그가 뽀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청정동의는 전해진 것이 된다.⁴² 한편, ⑤ 비구들이 뽀다까가 앉아 있는 모임에서 의무계율을 송출하면 악작죄가 되었으며,⁴³ ⑥ 안거에 든 비구를 뽀다까가 초대하더라도 청정한 삶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비구가 안거를 파기하더라도 무죄가 되었다.⁴⁴

자자참여에 있어서도 ⑦ 만약에 자자참여를 위임받았는데 불구하고 뽀다까라고 자인한다면, 타인에게 자자참여를 위임해야 하고,⁴⁵ ⑧ “만약에 자자참여를 전하는 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뽀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자자참여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되며,⁴⁶ ⑨ “만약에 자자참여를 전하는 자가 자자참여를 위임받고 참모임에 도착한 뒤에는 그가 뽀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자자참여는 전해진 것이 된다.”⁴⁷ ⑩ 자자를 행함에 있어서는 뽀다까가 앉아 있는 모임에서 자자를 행하면 악작죄가 되었다.⁴⁸

“그런데 한때 비구들이 안거를 끝냈지만 옷감이 생기지 않아 떠나기도 하고 환속하기도 했으며 죽기도 했다. 이때 뽀다까라고 자인하기도 했고, ... 남녀추니라고 자인하기도 했다.”⁴⁹ 이때 붓다는 비구가 뽀다까나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옷감의 주인은 승가라고 지정한다.⁵⁰ 이어서 안거를 끝내고 옷감이 생겼지만 분배되기 전에 뽀다까나 남녀추니라고 자인하더라도 옷감의 주인은 승가가 된다. 이러한 결정은 뽀다까와 남녀추니가 승가에 남기보다 떠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붓다는 다섯 가지 비구 승가[네 명의 비구 승가, 다섯 명의 비구 승가, 열 명의 비구 승가, 스무 명의 비구 승가, 스무 명 이상의 비구 승가]를 언급하면서 ⑪ “네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 뽀다까를 네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 된다.” ⑫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 뽀다까를 다섯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 된다.” ⑬ 열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 뽀다까를 열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 된다고, ⑭ 스무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도 뽀다까를 스무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 된다⁵¹고 규정한다.

이러한 때 어떤 자들의 항의는 유효하고, 어떤 자들의 항의는 유효하지 않는데, ⑮ 뽀다까의 항의는 유효하지 않다.⁵² 또한 사면복권(osāraṇīya, 해갈마(解羯磨))⁵³에 있어서도 ⑯ 뽀다까가 아직 사면복권의 시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그를 승가가 사면복권시켰다면, 잘못된 사면복권을 준 것이라고⁵⁴ 규정한다. 잘못된 사면복권을 준 대상은 뽀다까 외 도적[부도덕한 사이 비 수행자]처럼 들어와 함께 사는 자, 이교에 귀의한 자, 축생,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버지를 살해한 자, 거룩한 님을 살해한 자, 비구니를 능욕한 자, 승가를 분열시킨 자, 여래의 몸에 피를 낸 자, 남녀추니 등이 해당된다.

위의 사례에서 ‘자인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보면, 뽀다까는 양성구유사람처럼 신체적으로 성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고, 그 존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할 때 뽀다까인지 모르면 출가수행이 가능하였고, 나중에 자인하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성교 문제가 일어나면 멸빈된 것으로 보인다.

3) 남녀추니[양성구유인간(ubhatobyāñjanakapi)]

세 번째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녀추니[양쪽성의 성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양성구유인간(ubhatobyāñjanakapi)]이다. 이들도 ① 뽀다까처럼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되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남녀추니에게 구족계를 줘서도 안되며, 이미 구족계를 받았다면 멸빈해야 한다.⁵⁵ 왜냐하면 그가 비구들 가운데 출가하여 스스로 수행하고 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남녀추니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뽀다까의 ② 사례부터 ⑩ 사례까지 같은 이유로 등장한다.⁵⁶ 율장에서는 양성구유인간이 동료 비구나 비구니를 유혹하여 섹스를 가질 가능성 때문에 이들은 출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⁵⁷ 오늘날 남녀추니는 간성(Intersex)이라 하는데, 이들은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상 『마하박가』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자 동성애, 양성애, 뽀다까, 남녀추니이다.

2. 『췌라박가』

『췌라박가』는 승단의 의식주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율에 관해 설명하고, 끝부분에는 제1결집과 제2결집에 관한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다.⁵⁸ 붓다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사람은 진리를 잘 깨우치고 지금 여기서 칭찬받고 미래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가르침을 설하면서, ‘인사를 받을 수 없는 열 종류의 사람’ 가운데 뽀다까는 인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⁵⁹

1) 뽀다까와 남녀추니

뽀다까와 남녀추니가 차별받는 장면은 정사를 세우는 수리일과 연관된 세 장면에서 등장한다. 그때 (1) 비구들은 수리 일을 맡았지만 그들은 떠나기도 하고, 환속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다. 이때 비구가 스스로 뽀다까라고 자인하거나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승가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2) 비구가 수리 일을 맡아서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뽀다까 또는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3) 비구가 수리 일을 맡아서 끝내자 뽀다까 또는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그것은 승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한다.⁶⁰

2) 여자 뽀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이근녀(二根女)]

그런데 그때 구족계를 받은 자매들 가운데 여자 뽀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이근녀(二根女), ubhatobyāñjanakapi]가 있어서 세존께 알리게 되고, 붓다는 구족계를 줄 때에 스물네 가지 장애법에 대해서 묻도록 한다. 처음에는 비구들이 장애법을 직접 물었는데 자매들이 부끄러워 대답할 수 없게 되자, 이후 비구니승가에서 한 번 구족계를 받고 나서, 비구 승가에서 구족계를 다시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⁶¹ 자매들 중에는 성징이 없는 여인이거나, 여자 뽀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 등은 구족계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들은 성소수자라 할 수 있다.

『췌라박가』에서 여자 뽀다까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남자 뽀다까와 여자 뽀다까가 모두 출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췌라박가』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자 뽀다까[二根男], 남녀추니[간성], 여자 뽀다까[二根女], 남성적 여자 등이다. ‘남성적 여자’가 외모로 구분됨을 의미하는지, 성적 지향이 여성에게 끌리는 레즈비언(Lesbian)인지 명료하지 않다.

III. 『빅쿠비방가』, 『빅쿠니비방가』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숫따비방가』(Suttavibhaṅga: 경분별(經分別))에는 율장의 본문골자인 학습계율(sikkhapāda: 학처(學處))을 중심으로 한 성립 인연과 해석, 계율의 운용실태 등이 설명되어 있다. 『숫따비방가』는 비구의 계율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마하비방가』(Mahāvibhaṅga)와 비구니의 계율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빅쿠니비방가』(Bhikkhunīvibhaṅga)로 나눌 수 있으나, 권수로 나눌 때에는 『숫따비방가』 1권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계율을 2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계율을 다루는데, 이 2권의 후반부에 『빅쿠니비방가』가 들어가게 된다.⁶² 『마하비방가』는 비구의 계율로서 『빅쿠비방가』(Bhikkhuvibhaṅga)라고도 하는데, 『마하비방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구니에게도 공통되는 계율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³

1.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비구 의무계율[빠띠목카(Pāṭimokkha), 빠라지까(Pārājika) 해탈을 목표로 하는 학습계율의 목록]은 저지른 죄의 무거움의 정도에 따라 8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음과 관계된 성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뤄진다.⁶⁴ 호너(Homer)에 의하면,⁶⁵ 율장의 성애적인 표현의 보존에 관한 한 세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그것들은 일반대중을 위해서 송출되거나 기술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순결을 맹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 송출되거나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것들이 송출되고 기술되어 온 동기는 충격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정하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의 탐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부당한 행동유형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세한 기술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계율에서의 실제적·가능적 일탈을 상세히 묘사하여 그 일탈을 방지하려했기 때문이다.⁶⁶ 제1장 승단추방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고 나머지는 용서할 수 있는 죄이다.⁶⁷ 하지만 승단추방죄목 안에는 죄의 경중을 따져 악작죄나 무죄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붓다는 성교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집단에서 추방하지는 않았다.

붓다가 계율을 송출하는 열 가지 이유는 승가의 수승을 위하여, 승가의 안락을 위하여, 악한 비구[그리고 비구니]의 조복을 위하여, 품행이 바른 비구[그리고 비구니]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번뇌의 제어를 위하여, 다가오는 번뇌를 물리치기 위하여,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계율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⁶⁸

제1장 승단추방죄법[빠라지까(Pārājika),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⁶⁹ 서문에서 붓다는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들이 승가 안에 나타날 때까지 스승은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시설하지 않고 의무계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승가가 세월의 연륜에 도달하면, 승가에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스승은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시설하고 의무계율을 부과한다.’고 말한다. 붓다는 ‘승가가 모임의 광대화, 이익의 극대화, 배움의 극대화에 도달하면, 그때에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시설하고 의무계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⁷⁰ 몇 년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나 승단이 운영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계율이 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 붓다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승가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있다.

제1장 승단추방죄법은 사음(邪淫)과 관계된 성적 교섭[이하 성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뤄진다. 첫 번째 학습계율(sikkhāsāṅgīya)⁷¹은 수행자의 청정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성(性 sexuality)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극복을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율장은 성교를 승단추방죄법 뿐만 아니라 승단잔류죄⁷²(saṅghādisesa, 승잔(僧殘))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다른 것보다 맨 앞에 두고 특별히 상세한 분석으로써 다루고 있으며, 다른 죄법에서의 성과 관계된 계율까지 합치면 그 분량이 무려 1/3을 넘어설 만큼 방대하다.⁷³

울장비구계에 의하면, 비구의 성교 대상은 인간[여성, 남성, 양성]뿐만 아니라 비인간과 축생도 등장한다. 비구는 ‘세 가지 여성’[① 인간의 여성, ② 비인간의 여성, ③ 축생의 여성], ‘세 가지 양성’[④ 인간의 양성, ⑤ 비인간의 양성, ⑥ 축생의 양성], ‘세 가지 뺨다까’[⑦ 인간의 뺨다까, ⑧ 비인간의 뺨다까, ⑨ 축생의 뺨다까], ‘세 가지 남성’[⑩ 인간의 남성, ⑪ 비인간의 남성, ⑫ 축생의 남성]과 성교가 가능하다. 비구는 ① 인간의 여성부터 ⑥ 축생의 양성까지 세 가지 방식[항문, 성기, 구강]으로, ⑦ 인간의 뺨다까부터 ⑫ 축생의 남성까지 두 가지 방식[항문, 구강]으로 성교를 행하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⁷⁴

본 연구자는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비구의 성교를 열두 대상, 방식[항문, 성기, 구강], 원인, 상태[정신착란이나 술 취한 상태 등], 순서, 방법[적용시, 삽입시, 유지시, 인발시], 때[시기], 즐거움의 여부 등에 따라 약 2,019여 건[멸빈 15건, 무죄 393건, 승단잔류죄 17건, 승단추방죄 1420건, 약속죄 3건, 추악죄 169건, 변성 2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인간이 아니기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비인간[신·야차·유령·도깨비·요정·괴물·나찰·다나바·건달바·긴나라·마호라가 등]과 축생은 제외한다.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는 양성인(兩性人)과의 성교 185 건, 남자 동성 성교 243 건, 뺨다까와의 성교 140 건, 기존 성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는[변성(變性)] 2 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약 570여 건으로 확인된다. 이 사례들은 승단추방죄 400 사례, 멸빈 가능성 10 사례, 추악죄 48 사례, 무죄 110 사례 그리고 성징에 변화가 생긴 2 사례로 <표 1>에 자세히 분류하여 밝힌다. 먼저 성변환의 사례를 알아보고 나서 죄목 별로 살펴보겠다.

<표 1> 『빅쿠비방가-울장비구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약 570 여 건	
양성인(兩性人)[남녀추니]과의 성교 185 건	무죄 36 사례 승단추방죄 133 사례 추악죄 16 사례
남자 동성 성교 243 건	무죄 47 사례 멸빈 10 사례 승단추방죄 166 사례 추악죄 20 사례
뺨다까와 성교 140 건	무죄 27 사례 승단추방죄 101 사례 추악죄 12 사례
변성 2 건	성변환 2 사례

1) 성변환[변성(變性)]

붓다고사는 양성인을 남녀 성기를 다 갖추고 있는 남녀추니[양성구유인간(ubhatobyañjanaka)]라고 보았고⁷⁵ 전재성 역시 남녀추니와 양성인의 빨리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양성인 또는 남녀추니로 번역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⁷⁶ 『빅쿠비방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존 성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는 두 사례는 성징이 바뀌었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1923-27) 한때 어떤 비구에게 여성의 특징이 드러났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수행승[이하 비구]들이여, 그러한 친교사, 그러한 구족계, 그러한 법랍을 지닌 비구니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

(1923-28) 한때 비구니가 남성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비구들이여, 그러한 친교사, 그러한 구족계, 그러한 법랍을 지닌 비구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⁷⁷

위의 내용은 초기불교에서 찾아지는 유일한 변성(變性) 사례이다. 비구에게 여성의 특징이, 비구니에게 남성의 특징이 드러난 것에 대해 전재성은 성적 행위의 특징인지, 성기의 특징인지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열어둔 바 있다.⁷⁸ 흥미로운 것은 붓다는 성징의 변화가 공동체 생활이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수행 중에 기존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더라도 성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구에게 여성의 특징이 드러날 경우, 비구니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비구니에게 남성의 특징이 드러날 경우, 비구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자비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안옥선은⁷⁹ 성전환(變性)[變性]이 승가로부터 병적인 현상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승단추방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약 570여 건 가운데 승단추방죄는 400 건으로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인간의 양성과 세 가지 방식 즉, 항문과 성기와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 … (7) 인간의 뺨다까와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 (10) 인간의 남성과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 (22) 비구가 성적 욕구를 일으켜 인간의 양성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⁸⁰

붓다는 성교가 가능한 세 가지 방식[항문, 성기, 구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적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 외 양성인(兩性人)과 뺨다까를 그리고 성교의 길로 성기 외에 항문이나 구강도 언급한다. 여기서 성교가 가능한 길로써 항문이나 구강을 성기에 비해 더 하열한 기관이라고 폄하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나란히 두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⁸¹ 붓다는 해탈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릇된 욕망의 대표적 상징인 성행위(동성애도 포함됨)를 금기시켰지 특정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동성에 행위만을 별도로 거론한 적은 없다.⁸²

3) 무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무죄를 받는 경우가 110건 등장하는데, 그 기준은 즐거움을 느낀 여부로서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무죄이다.

(452) [세존] 비구의 적대자들이 인간의 양성을 비구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항문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적용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삽입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유지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인발시에도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무죄이다.⁸³

(1832) [세존] 비구의 적대자들 … 적대자인 왕들 … 적대자인 도적들 … 적대자인 건달들 … 적대자인 갱단들이, 죽어서 거의 파괴된 인간의 남성을 비구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항문 … 그의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 그는 유격[성기를 감싼 것]이고 비구는 무격[성기를 드러낸 것]이고 … 그는 무격이고 비구는 유격이고 … 그는 유격이고 비구도 유격이고 … 그도 무격이고 비구도 무격이고 간에, 그러한 적용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삽입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유지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인발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무죄이다.⁸⁴

4) 멸빈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멸빈 가능성에 대해 15 사례가 등장한다. 멸빈은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하는 것으로서,⁸⁵ 이 가운데 성소수자와 상관있는 상황은 10 사례이다.⁸⁶

(1923-91) 한때 베살리 시에 릿차비 족 청년들이 비구를 붙잡아 뺨다까와 음행하게 했다. 양자가 함께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꼈다면, 수행승은 멸빈되어야 한다. 비구가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비구는 무죄이다.⁸⁷

5) 추악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를 범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중죄인 추악죄(醜惡罪, thullaccaya)는 48건으로 확인된다. 이 죄는 결계 밖으로 가서 4인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회복이 가능하였다.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추악죄로 판명한 48건은 비구의 적대자들[타자]에 의해 죽어서 거의 파괴된 대상[인간의 양성, 인간의 뺨다까, 인간의 남성]을 상대로 성교를 강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승단추방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인 제2장 승단잔류죄법에 따르면, 비구가 뺨다까를 뺨다까라고 지각하여 탐애를 갖고 그 뺨다까의 몸과 자신의 몸을 접촉하거나 건드리면, 추악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세존] 뺨다까가 있는데 뺨다까라고 지각하여 탐애를 갖고, 비구가 그 뺨다까의 몸과 자신의 몸을 접촉하거나, 마촉하거나, 순리적으로 마찰하거나, 거슬러 마찰하거나, 아래로 구부리거나, 위로 쳐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껴안거나, 붙들거나, 붙잡거나, 건드리면, 추악죄를 범하는 것이다.⁸⁸

그 밖에 뺨다까를 뺨다까라고 의심을 갖고, 뺨다까가 있는데 남자라고 지각하여, 뺨다까가 있는데 여자라고 지각하여, 남자가 있는데 남자라고 지각하여, 남자가 있는데 남자인가 의심을 갖고, 남자가 있는데 뺨다까라고 지각하여 각각 탐애를 갖고 몸을 접촉하거나 건드리면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다.⁸⁹ 외모만으로 뺨다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붓다는 승단잔류죄법에서 매도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 의미 가운데 “그대는 여자 뺨다까이다, 그대는 남성적 여자이다. … 그대는 남녀추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매도를 하면 정황에 따라 추악죄나 승단잔류죄,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⁹⁰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570여 건의 성소수자 사례와 상관되는 죄 범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빅쿠비방가-울장비구계』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성소수자 관련 죄 법과 그 특징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성소수자 570 여건		특징
승단추방죄	400	- 비구가 (성욕을 일으켜) 인간[비인간·축생]의 여성[양성·뺨다까·남성]과 세[두] 가지 방식[항문, 성기, 구강]으로 성교를 행한다면 -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멸빈	10	남자 동성애: 양자 멸빈 6 - 양자가 함께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꼈다면 남자 동성애: 폭행자 멸빈 4 - 비구나 사미가 잠자는 비구나 사미를 범하는데, 깨어난 자가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추악죄	48	- 비구의 적대자들이 강제로 비구에게 죽어서 거의 파괴된 대상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을 경우;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거나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아도 - 길[구강, 항문, 성기] 아닌 길을 통해서 길 아닌 길에 들게 하면
무죄	110	- 알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이거나, 정신이 착란된 자이거나, 마음이 심란한 자이거나, 애통해 하는 자이거나, 초범자의 경우 -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 - 자의에 의한 누정이 아닌 경우
성변환	2	수행 중에 기존과 다른 성징이 드러난 경우

이상 『빅쿠니비방가』의 성소수자 사례는 양성인[남녀구유인간, 간성], 뽀다까, 남자 동성애, 기존의 성과 다른 성정이 드러나는 사례이다.

2.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제』

현존하는 빠알리본 『빅쿠니비방가』는 완전한 『빅쿠니비방가』의 생략형이다. 왜 독립적으로 전승되지 않고 비구비방가의 부록 형태로 전승된 것인가에 대해 전제성은 오늘날 인도나 동남아 제국에서 비구니의 승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⁹¹ 그는 실제로 독립된 『빅쿠니비방가』를 완전한 형태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⁹² 붓다는 승단을 만든 이래로 적어도 20년간은 비구 위주로 즉, 출가 남성위주로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출가 여성중심의 『빅쿠니비방가』를 복원하는 문제는 특히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계율을 복원하는 데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다고 밝히고 있다.⁹³ 본 연구자는 공통되는 부분이 아닌, 비구니율에 등장하는 여성 동성애 유사 사례를 살펴하기로 한다.

1) 여자 동성애

붓다가 아나타뽀디까 승원[기수급고독원]에 있을 때이다. 두 비구니가 욕구불만으로 괴로워하다가 실내에 들어가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하였고, 그 소리에 다른 비구니들이 달려와 “왜 그대들은 남자와 음행을 하는 것인가?”라며 비난하는 일이 생긴다. 이에 붓다는 열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율을 송출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고 명시한다. 이때 ‘손바닥으로 때리기’는 마촉(摩觸)을 즐기는 것인데 연인으로라도 은밀한 곳의 때리기를 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질병 때문인 경우나 정신착란자이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⁹⁴ 마촉한다는 것은 접촉한다는 의미로, 비구니가 남성과 마촉할 경우엔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으로 함께 살 수 없다.⁹⁵ 속죄죄(贖罪罪, pācittiya, 바일제(波逸提), 타(墮))는 속죄가 필요한 죄인데,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다.⁹⁶ 이 사례에 등장하는 비구니들이 동성끼리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레즈비언이거나 양성애일 수 있다. 붓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은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승가나 개인에게 참회해야 한다고 타이른다.

그리고 예전에 왕의 궁녀였던 비구니와 한 비구니 사이에서 인조음경을 사용하다가 다른 비구니들이 알게 되어, 그것에 대해 욕망을 여윈 비구니들이 분개하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 사실을 비구들에게 알리고, 욕망을 여윈 비구들 역시 혐책하고 분개하며 비난하였다. 이때 붓다는 “인조음경을 사용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고 명하지만, 질병이나, 정신착란자이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라고 조치한다.⁹⁷ 여기서 말하는 질병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즐거움을 느낀 여부에 대해서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대처한다. 위의 두 사례는 동성애를 즐겼거나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구니들이 둘이서 한 침상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정사를 순례하다가 보고 “마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누리는 재가자와 같다.”며 혐책하고 분개하며 비난하였다. 이때도 붓다는 “어떠한 비구니든지 둘이서 한 침상을 함께 사용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누운 곳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두 사람이 앉는 경우이거나, 정신착란자이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라고 설명한다.⁹⁸

비구니들이 둘이서 욕피[뒹개이자 옷]를 함께 사용해도 속죄죄이지만, 경계를 나누어 눕는 경우거나, 정신착란자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⁹⁹ 또한 비구니들이 비구니들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맛사지[마촉]하게 해도 속죄죄인데,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거나, 정신착란자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¹⁰⁰ 이런 방식으로 비구니가 식차마나(式叉摩那, sikkhamāna)[정학녀(淨學女)]¹⁰¹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맛사지하게 하더라도 속죄죄를 범하는 것인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거나, 정신착란자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다.¹⁰² 마찬가지로 비구니들이 사미니나 재가녀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맛사지하게 하더라도 똑같은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¹⁰³

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여성 출가자들[비구니, 식차마나, 사미니]이 레즈비언(Lesbian)을 의미하는지, 양성애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녀들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행동에 대해 붓다는 비구들과는 달리 즐거움을 느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참회하도록 한다. 또한 질병이나 정신착란자, 초범자,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무죄로 간주하며 유연하게 대처한다. 율장에 등장하는 질병이나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지만, 오늘날 치유나 치료 목적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맛사지가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붓다는 그녀들이 수행을 계속하여 번뇌의 불길을 끄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팔리어 율장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사례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팔리어 율장	성소수자 분류
『마하박가』	남자 동성애, 양성애(Bisexual), 뽀다까, 남녀추니[양성구유인간]
『졸라박가』	뽀다까, 남녀추니[이근남(二根男)] 성징이 없는 여인, 여자 뽀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이근여(二根女)]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양성인(兩性人)[남녀추니, 양성구유인간], 남자 동성애, 뽀다까, 변성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	여자 동성애

IV. 맺음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제정을 미루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1997년 성소수자 불교공동체와의 토론을 가진 후 “나 달라이 라마는 성적 지향성에 기반을 둔 폭력과 차별에 반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존경심과 관용, 동정심, 그리고 인권의 완전한 인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라며 언론 발표문을 내놓았다.¹⁰⁴ 이에 반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 표명을 하는 정도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불자 성소수자들은 불교계가 기독교의 폭력적인 방식과 다른 자비스러운 논리를 내놓기를 바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경전을 연구해주길 바랐다.

본 연구자는 붓다 당시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조명하고자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대부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팔리어 율장에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양성애, 남자 뽀다까, 여자 뽀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구유인간[양성자, 남녀추니, 간성], 기존 성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다. 이는 붓다가 출가하는 사람들을 성적지향, 성별, 성징, 출신지, 신분, 장애, 직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고 모두 평등하게 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율장비구계의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는 약 570 여 건으로 확인된다. 이 사례들은 승단추방죄, 멸빈, 추악죄, 무죄 그리고 성징에 변화가 생긴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붓다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용서할 수 있는 죄로 구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승려는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였다. 붓다는 인간 성(性)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맛지마니까야』 3권 「뽀달리 경」에 의하면, 붓다는 “교단이 세속적 이익의 절정에 이르지 않고, 명성의 절정에 이르지 않고, 번쇄한 학문에 이르지 않고, 오랜 세월에 이르지 않는 한, 교단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 것들이 나타날 때 학습계율을 시설하고 의무계율을 부과한다고¹⁰⁵ 말한다.

인도에서 남녀 성차별은 고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보편적 문화 현상이다.¹⁰⁶ 붓다가 여성의 출가를 수용했던 것이 승단이 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아난의 권청으로 이뤄졌던 점을 미뤄보면, 남자 성소수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이 놀랍다. 누구든지 바르게 수행한다면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뻘다까 중에는 은사가 되는 사례도 있다. 그는 구족계를 받고 은사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수행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뻘다까라 하더라도 성교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나, 스스로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단이 구성되고 여러 해가 흘러, 수행에 방해가 되는 성교 문제가 나타나고, 승단 안팎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생기며, 승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쌓이게 되자 붓다는 뻘다까와 남녀추니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급기야 승가에서 퇴출시켰으며 출가도 금지시켰다. 그러나 향문 성교가 가능한 남자 동성애나, 양성애, 남성적 여자 등에 대해서는 출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마하박가』의 사미 깐다까의 사례를 보면, 처벌이나 차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미가 서로 동성애를 범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책임자를 참회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도 한 비구가 두 사미를 거느려서라고 언급된다. 『줄라박가』의 정사 수리 장면을 상기하여 보자. 비구가 스스로 뻘다까 또는 남녀추니라고 자인하면, 승가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결정한다. 만약 자인하지 않는다면 외모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빅쿠비방가』의 승단잔류죄법에, 뻘다까를 남자나 여자로 지각하기도 하였고, 남자를 뻘다까로 지각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율장에는 뻘다까나 남녀추니가 스스로 자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오늘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대부분 드러내지 않는/못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붓다의 수용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없었거나 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팔리어니까야 경전에 대해 붓다가 머문 장소, 경을 설하는 중요인물, 붓다의 말씀을 듣는 대화상대자, 설법 형태 등에 대해 통계로 밝힌 자료¹⁰⁷에서도 성소수자를 특별한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붓다는 성변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성전환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물이해, 선입견, 편견, 혐오, 차별 등이 지배적이다.¹⁰⁸ 성소수자와 관련된 인권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 또는 성장했다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율장의 성소수자 사례를 제시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성소수자들도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근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요약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편견과 혐오 속에서 차별받으며 소외된 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불자 성소수자들은 불교계가 기독교의 폭력적인 방식과 다른 자비스러운 논리를 내놓기를 바라며 성소수자에 대해 경전을 연구해주길 바랐다. 본 연구는 붓다 당시 성소수자들의 수행 생활을 조망하고자 전제성이 세계 최초로 완전 복원하여 번역 출간한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팔리어 율장에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양성애, 남자 뻘다까, 여자 뻘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구유인간, 성변환 사례가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까지 붓다는 출가자들을 성적지향, 성별, 성징, 출신지, 신분, 장애, 직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뽀다까 가운데는 은사가 될 정도의 수행을 한 비구도 등장한다. 당시에는 성정체성을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는/못하는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붓다 시대보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편견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팔리어 율장, 성소수자, LGBT, 뽀다까(판다카), 젠더

References

- 전재성 역주,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a.
- 전재성 역주,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b.
-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율장대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a.
- 전재성 역주, 『쥘라박가-율장소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b.
- 전재성 역주, 『맛지마니까야』 3권,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3.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020.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 불교 -남보다 한 가지 고민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
- 안옥선,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제48호,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7.
- 윤종갑, 「불교에서의 평등과 차별-젠더와 깨달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제5집,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 일아,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서울: 불광출판사, 2019.
- 잭 콘필드·폴 브라이터, *The Insight Meditation of Achaan Chah*, 김 윤 역, 『아찬차 스님의 오두막』, 경기도 고양: 침묵의 향기, 2005.
-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BBC 뉴스 코리아>, 2020년 7월 1일자, 인터넷기사,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 차효록(효록),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 불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불교학연구』 제48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 최유,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망」, 『중앙법학』 16(3), 서울: 중앙법학회, 2014.

- 피터 하비,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Foundations, Values and Issues*, 허남결 역, 『불교윤리학 입문-토대, 가치와 쟁점』, 서울: 씨아이알, 2014.
- 허남결, 「동성애와 불교의 입장-역사적 사례와 잠정적 결론」 『불교연구』 28,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8.
- Cabezón, J. I., "Homosexuality and Buddhism", in Swidler, A. (ed.), *Homosexuality and world religions*,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3.
- Horner. I. B., *The Books of the Discipline*, vol. I - V, London: Pali Text Society, 1938-1966.

Endnote

- 1 최유,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망」, 『중앙법학』 16(3)(서울: 중앙법학회, 2014), 101쪽.
- 2 최유, 위의 논문, 45쪽.
- 3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BBC 뉴스 코리아>>, 2020년 7월 1일자,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검색일자: 2020. 7. 27.)
- 4 국가인권위원회,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020.
- 5 허남결, 「동성애와 불교의 입장-역사적 사례와 잠정적 결론」, 『불교연구』 28(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8), 261-263쪽.
- 6 Cabezon, J. I., "Homosexuality and Buddhism", in Swidler, A. (ed.), *Homosexuality and world religions*, 1993,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p.82. 피터 하비,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Foundations, Values and Issues*, 허남결 역, 『불교윤리학 입문-토대, 가치와 쟁점』 (서울: 씨아이알, 2014), 771쪽에서 재인용.
- 7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 불교 -남보다 한 가지 고민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
- 8 잭 콘필드·폴 브라이트, *The Insight Meditation of Achaan Chah*, 김 윤 역, 『아찬차 스님의 오두막』 (경기도 고양: 침묵의 향기, 2005), 99쪽.
- 9 전재성 역주,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b), 19쪽.
- 10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율장대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a), 20-22쪽 해제 참조.
- 11 승단예의 입단. 속죄죄법 제65조에는 20살 미만의 자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른 곳의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출가한 지 5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구족계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율장의 다른 곳에서는 7세 아동이 출가하여 거룩한 님의 경지를 얻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점을 미뤄보면, 출가와 구족계가 구분된 것은 승단제도가 확립된 후대일로 추측된다.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67-68쪽.

- 12 처음에는 포살기간에 모여 말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르침을 설하게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의무계율의 송출이 주된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포살은 지정학적으로 일정한 경계 안에서 사는 수행승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의 경계를 포살결계라고 한다. 전재성 역주(2014a), 앞의 책, 54-55쪽.
- 13 식물과 동물에 대한 배려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안거가 시설되었지만 비구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법의 어려움과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안거 시기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 안거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동성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재성 역주(2014a), 앞의 책, 55-56쪽.
- 14 매년 안거가 끝나는 날에 비구들이 서로 안거 동안의 보인 것이나 들린 것이나 의심된 것으로서의 죄에 대해서 승가 전체가 모인 가운데 충고해 주길 요청하는 것. 전재성 역주(2014a), 앞의 책, 57쪽.
- 15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52쪽.
- 16 비구가 되기 이전의 예비승으로 10계를 받은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출가한 남자.
- 17 전재성은 비구를 수행승으로, 비구니는 수행녀로 번역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구와 비구니라고 칭하기로 한다.
- 18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34-235쪽.
- 19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177-178쪽.
- 20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44-245쪽.
- 21 뺨다까 외, 구족계를 받지 않고 도둑처럼 들어와 함께 사는 자, 축생,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버지를 살해한 자, 거룩한 님을 살해한 자, 여래의 몸에 피를 낸 자, 남녀추니 등은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되고 이미 받았다면 멸빈되어야 한다.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50-256쪽.
- 22 출가하여 20세 이상이 되어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여자. 전재성 역주(2015a), 앞의 책, 545쪽.
- 23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빼앗거나, 순결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 있는 것에 취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승가를 비방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거나, 비구니를 능욕한다면 등 이다.
- 24 전재성 역주(2014a), 앞의 책, 248-249쪽.
- 25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1639-1644쪽.
- 26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앞의 책, 27-28쪽.
- 27 전재성 역주(2014a), 앞의 책, 249쪽.
- 28 특별한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적 특성에 대해 ‘질문(ques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 29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과 시스젠더 규범성에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 30 젠더퀴어의 종류로 성별이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이다. 여성과 남성은 물론이고 안드로진,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젠더 사이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오간다.
- 31 일부 북미 원주민이 그들의 문화에서 전통적인 제 3 성별 의식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사회의 원주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대 범인도의 포괄적 용어.
- 32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49-250쪽.
- 33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165쪽.
- 34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57쪽.
- 35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청정인데, 자기의 청정을 전달하여 포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청정권리’라고 번역한다.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11쪽.
- 36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13쪽.
- 37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14쪽.
- 38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16쪽.
- 39 승가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의식이나 의례나 범계(犯戒)를 처리하는 것.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5-26쪽.
- 40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19쪽.
- 41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21쪽.
- 42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23쪽.
- 43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63쪽.
- 44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88-389쪽.
- 45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413쪽.
- 46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415쪽.
- 47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417쪽.
- 48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453쪽.
- 49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707-709쪽.
- 50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708쪽.
- 51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732-739쪽.
- 52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741쪽.
- 53 권리정지조치나 한시퇴출조치를 받고 격리되었거나 한시적으로 피난해 있다가 승가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할 때에 다시 권리정지나 한시퇴출을 해제하는 것.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34쪽.

- 54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743쪽.
- 55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56쪽.
- 56 전재성 역주(2014a), 위의 책, 258-453쪽.
- 57 피터 하비, 앞의 책, 752쪽.
- 58 전재성 역주, 『폴라박가-울장소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b), 21쪽.
- 59 전재성 역주(2014b), 위의 책, 787-788쪽.
- 60 전재성 역주(2014b), 위의 책, 805-817쪽.
- 61 전재성 역주(2014b), 위의 책, 1032-1033쪽.
- 62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22쪽.
- 63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52쪽.
- 64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55-56쪽.
- 65 Horner. I. B., *The Books of the Discipline*, vol. I - V (London: Pali Text Society, 1938-1966).
- 66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58-59쪽.
- 67 전재성 역주, 『빅쿠니비방가-울장비구니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5a), 28쪽.
- 68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128쪽;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567-1568쪽.
- 69 수행에서의 패배자가 된다는 것으로 가장 무서운 죄. 음행, 투도, 살인,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에 대한 사칭이다.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28쪽.
- 70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102-104쪽.
- 71 원래 ‘학습과 삶의 규범’이라는 의미인데, 전체 문맥을 보면 ‘삶의 규범’이 ‘계율’을 의미하므로 학습계율이라고 번역.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130쪽.
- 72 승단추방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에 해당. 비구로서의 목숨이 남아 있어 승단에 남아있을 수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 성추행죄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승단추방죄로 비방한 죄 등이 해당. 이것을 범하면 현전승가(現前僧伽)에서 격리처벌을 받고 참회 해야한다.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28-29쪽.
- 73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56쪽.
- 74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151-152쪽.
- 75 피터 하비, 앞의 책, 752-753쪽 참고.
- 76 본 연구자는 이 연구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에 대해 전재성 박사와 직접적으로 교신하여 확인하였다.
- 77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520쪽.
- 78 2015년 12월에 본 연구자와 만났을 때 양 쪽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 79 안옥선, 「트랜스젠더와 불교」, 『한국불교학』 제48호(서울: 한국불교학회, 2007), 53쪽.
- 80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152-153쪽.
- 81 차효록(효록),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 불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불교학연구』 제48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6), 315쪽.
- 82 허남결, 앞의 책, 262쪽.
- 83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219-220쪽.
- 84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491쪽.
- 85 전재성 역주(2014a), 앞의 책, 255쪽.
- 86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535-536쪽.
- 87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535쪽.
- 88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811쪽.
- 89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811-812쪽.
- 90 전재성 역주(2015b), 위의 책, 834-836쪽.
- 91 전재성 역주(2015a), 앞의 책, 52쪽.
- 92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55쪽.
- 93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54쪽.
- 94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565-1566쪽.
- 95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773쪽.
- 96 전재성 역주(2014b), 앞의 책, 29쪽.
- 97 전재성 역주(2015a), 앞의 책, 1566-1568쪽.
- 98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639-1641쪽.
- 99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641-1644쪽.
- 100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803-1807쪽.
- 101 20세 이전의 여자 출가자 가운데 20세 이전의 2년간은 정학녀라고 하고, 그 이전은 사미니라고 한다. 20세 이후에 출가해도 구족계를 받기 전에 2년간 견습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545쪽.
- 102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807-1809쪽.
- 103 전재성 역주(2015a), 위의 책, 1810-1814쪽.
- 104 David S. da Silva Cornell, 1997년 7월 7일에 있었던 ‘불교’ 인터넷 토론 포럼에 게시된 ‘Official Press Releases from Lesbian and Gay Meeting with Dalai Lama’. 피터 하비, 앞의 책, 788쪽에서 재인용.

- 105 전재성 역주, 『맛지마니까야』 3권(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3), 105-106쪽; 전재성 역주(2015b), 앞의 책, 103쪽 각주.
- 106 윤종갑, 「불교에서의 평등과 차별-젠더와 깨달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제5집(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181쪽.
- 107 일아,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서울: 불광출판사, 2019).
- 108 안옥선, 앞의 논문, 63쪽.